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하나 마이크로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a Micron Inc.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및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와 판매업
2. 반도체 제조기기 및 검사기기의 제조 판매, 무역, 임대, 서비스업
3.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4.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 및 판매업
5. 전자카드 제조 및 판매업
6.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업
7.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8.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9. 산업용 가스의 제조, 정제, 충전 및 판매업
- 10.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개발, 임대, 판매업
- 11.RFID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12.LED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13.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 및 판매업
- 14.정보통신기기 제조 개발 용역업 및 판매업
- 15.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 16.노우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업
- 17.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 18.부동산임대업
- 19.부동산 개발 및 판매업
- 20.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관련 사업
- 21.기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및 판매업
- 22.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본점의 소재지)

- ①회사의 본점은 아산시 음봉면 내에 둔다.
-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출장소,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amicron.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조(발행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 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 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8조(삭제)

제 8조의 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9조(주식의 종류)

- ①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 ②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 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⑥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할증 발행의 경우 할증 분 포함) 및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액면가에 대한 청산금의 비율이 보통주가 신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신주의 주주는 그 차이에 상응하여 추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 ⑦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증자를 통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3(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①회사는 제9조의 1 및 제9조의 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가 발행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그 수와 내용은 제9조의 2 제1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 4(상환주식)

- ①회사는 제9조, 제9조의 2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상환주식의 상환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일이 되는 날에서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 방법 등을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 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회사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또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 가액을 지급한다.

#### 제9조의 5(전환주식)

①회사는 제9조, 제9조의 2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익배당, 의결 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주식의 전환 비율은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 조정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일이 되는 날에서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일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④전환청구 기간은 제9조의 5 제3항에서 정한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로 정한다.

⑤회사는 전환청구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의 전환 청구에 의하여 전환 주식을 전환할 수 있으며,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 6(상환전환주식)

①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 2에 따라 이를 상환주식인 동시에 전환주식인 상환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 4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5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1조(삭제)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 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 하는 방법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 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주식의 소각)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삭제)

##### 제16조의 2(주주명부)

①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월1일 부터 1월31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년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 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 ④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21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 ①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23조(소집시기)

- 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4조(소집권자)

- ①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 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 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

###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제 1절 이사

####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6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8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9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금규정에 의한다.

#### 제40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 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절 이사회

#### 제41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이사회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이사회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3조(이사회 의사록)

- ①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4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3절 대표이사

#### 제45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 6 장 감 사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제48조(감사의 선임)

-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 하여야 한다.
-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3항 및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 계

#### 제53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 여 야 한다.
-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 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 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7조(이익배당)

- ①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서기 2002년 4월 9일 개정

2차 개정: 서기 2002년 12월 23일 개정

3차 개정: 서기 2003년 3월 19일 개정

4차 개정: 서기 2004년 3월 30일 개정  
5차 개정: 서기 2005년 2월 17일 개정  
6차 개정: 서기 2006년 3월 28일 개정  
7차 개정: 서기 2009년 3월 25일 개정  
8차 개정: 서기 2010년 3월 22일 개정  
9차 개정: 서기 2011년 3월 21일 개정  
10차 개정: 서기 2012년 3월 26일 개정  
11차 개정: 서기 2015년 3월 25일 개정  
12차 개정: 서기 2017년 3월 29일 개정  
13차 개정: 서기 2019년 3월 27일 개정